

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

의 안 번 호	1647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2월 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사당역 일대는 과천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저지대로, 집중호우 시 사당천 상류 유역으로부터 빗물 유출수 집중으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.
- '22.8월 서울지역 이상폭우(최대 141.5mm/h) 발생으로 사당역 일대를 포함한 서초, 동작 지역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
- 나. 사당·이수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'사당천 단면확장', '이수-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', '사당IC 저류조 증설' 등 대책을 추진 중이나,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사당천 상류(수방사 내)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추진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당천 상류에서 사당역쪽으로 유출되는 우수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수방사 내 빗물 저류조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호협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코자 하며,
- 나. 이와 관련하여 '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'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이동섭 (☎ 2133-3893)

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 라 한다)와 수도방위사령부는 「자연재해 대책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 (“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”)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기상이변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,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수도방위사령부 건축물 옥상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2.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상부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
3. 수도방위사령부 제곡부 저류 및 하류부 수문 설치에 관한 사항
4.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 설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우수유출저감 및 수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역할 및 책임)

1. 서울시는 제 3조에서 정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한다.
2. 수도방위사령부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.

제5조(공동협력) 양 기관은 제3조 제4호에 따른 지하 저류조 설치에 관하여는 국방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,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 및 시설 유지 관리·운영 등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며, 제7조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석,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 양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양 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) ①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단,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호 서명하여
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2월 00일



서울특별시장



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